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34호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731 호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공 동 주 택 과	2
○ 공 고 제 1738 호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 획 예 산 과	9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4 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3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5 호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1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6 호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54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7 호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63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8 호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73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9 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82
○ 의회사무국공고 제 6 1 호	「남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90
○ 의회사무국공고 제 6 2 호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03

고 시

○ 고 시 제 125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112
---------------	-----------------	-----------	-----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731호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3. 9. 27.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단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한정된 사업예산 내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을 늘리고자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를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변경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보조금 지원 결정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축소(안 제4조제1항)
- 공동주택별 보조금 지원한도 하향 조정(별표2)
- 위원회 운영방법 변경(비상설화) 및 구성인원 확대(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793, FAX 453-279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단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한정된 사업예산 내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을 늘리고자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를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변경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보조금 지원 결정

☐ 주요내용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축소(안 제4조제1항)
- 공동주택별 보조금 지원한도 하향 조정(별표2)
- 위원회 운영방법 변경(비상설화) 및 구성인원 확대(안 제12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를 “다만,”으로,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한다.

[별표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제4조 관련)

공동주택별 보조금 지원한도	비고
30,000천원	공동주택별로 5년 동안 지원한 금액의 합산액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2. ----- ----- 단 만, ----- ----- ----- 10년----- -----.
가. ~ 차. (생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13명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6. 28.)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738호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27.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1. 제안이유**

-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지판 설치대상 및 범위 규정 : (안 제2호)
- 표지판 설치 의무 통지 및 설치기간 규정 : (안 제3조)
- 표지판 관리 사항 규정 : (안 제4조)
- 표지판 형식 규정: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63, FAX 453-20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끝.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표지판 설치대상 및 범위 규정 : (안 제2호)
- 표지판 설치 의무 통지 및 설치기간 규정 : (안 제3조)
- 표지판 관리 사항 규정 : (안 제4조)
- 표지판 형식 규정: (안 제5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2023년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매뉴얼」
 - 지방보조금 교부시 사업장에 ‘지방보조금 목적외 사용 금지 표지판’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남동구 시행규칙 제 호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
3.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단체 지원 사업
 -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 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에서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표지판의 설치에 이 규칙 시행 후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표지판 형식

공사 표지판	■사업자명 :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지원기간 : '00.00.00~00.00.00 ■보조금액 : ○○○백만원 ■지원근거 : 「지방보조금법」 및 남동구 조례 이 공사는  남동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 표지판	■사업자명 :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지원기간 : '00.00.00~00.00.00 ■보조금액 : ○○○백만원 ■지원근거 : 「지방보조금법」 및 남동구 조례 이 시설은  남동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 표지판	■사업자명 :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지원기간 : '00.00.00~00.00.00 ■보조금액 : ○○○백만원 ■지원근거 : 「지방보조금법」 및 남동구 조례 이 시설은  남동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할 수 있음.

2.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지원 표기

공사명	
공사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인	
공사금액	백만원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	남동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부착위치

※ 공사 표지의 내용 및 보조금지원 표시 위치는 공사 내용·현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함.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2항 관련)

규 격	설치높이	재 질	글씨 및 색채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표지판 상단 기준 바닥 면에서 150cm 이상	금속·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표지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관리 번호	사업명	보조사업자	소재지	설치일	표지판 위치	의무설치 기 한	점검일	점검자	점검 결과	비고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 개요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소 재 지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시 , 구 , 자부담)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 표지판 설치

설 치 일 자	
위 치	
종 류	공 사 표 지 판 () 시 설 표 지 판 () 운 영 표 지 판 ()
규 격	
재 질	
< 변 경 사 항 > ○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자	
소 재 지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시 , 구 , 자부담)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 표지판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위 치		
종 류	공공시설영표표지판 () 공공시설영표표지판 () 공공시설영표표지판 ()	공공시설영표표지판 () 공공시설영표표지판 () 공공시설영표표지판 ()
규 격		
재 질		
내 용		
사 유		

* 붙임 : 현장사진 1매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청장 귀하

[참고자료]

□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단체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5년이 경과한 날
-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 ② 표지판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표지판 등의 철거)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철거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

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2. 철거 가능한 경우

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③ 그 밖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969호,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년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매뉴얼

지방보조금 교부시 사업장에 ‘지방보조금 목적외 사용 금지 표시판’ 운영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일정액 이상 보조금을 받는 지방보조사업자(법인·단체) 사업장에 ‘지방보조금 목적외 사용 금지 표시판’ 설치 표시판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교부조건 등을 통해 근거 마련

< 표지판 (예시) >

- | | |
|--------------------------|--|
| ■ 사업자명 : □□□ (지방보조금사업자) | ■ 보조금 지원 기간 : '23.00.00 ~ '25.00.00 (2년) |
| ■ 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 | ■ 보조금 교부기관 : ◇◇시(지자체명) |
| ■ 사업목적 : △△△ | ■ 보조금액 : 00억원 |
| ■ 근거 : 「지방보조금법」 및 ◇◇시 조례 | |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54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2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구역의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이 되는 면적 산정 시 도로 등의 면적 제외(안 제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 ~ 10.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46
----------	------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27일
발 의 자 : 김재남 의원
찬 성 자 : 이연주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구역의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이 되는 면적 산정 시 도로
등의 면적 제외(안 제4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을 “점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업지역: 30개 이상 밀집
2.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 밀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수를 합산하여 정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u>심의위원회</u> 를 거쳐 남동구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 ----- ----- ----- <u>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u>점포가 30개 이상 밀집</u> 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① ----- ----- ----- ----- ----- <u>점포는</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 -----.
<신설>	1. 상업지역: 30개 이상 밀집
<신설>	2.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 밀집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수를 합산하여 정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략)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위원회-----
-----.

② ~ ⑥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개정안으로써 비용발생요인은 해당없는 사항이며 또한,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 비용이 유동적으로 비용추계가 불가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장 김 현 수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55호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2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현행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는 동물에 대한 유기나 학대에 대응하여 구조와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동반자적 관점의 동물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추세임. 따라서 이러한 취지와 방향성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함

2. 주요 내용

- **제명 변경:**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남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참여와 협력(안 제3조~제4조)
- 동물복지계획의 시행(안 제5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행자 관리(안 제6조~제7조)
- 동물의 구조 및 보호, 공고, 임시보호 등(안 제8조~제10조)

- 동물의 반환 및 기증, 보호비용의 징수(안 제11조 ~ 제12조)
- 동물의 입양 지원(안 제13조)
- 길고양이의 관리 등(안 제14조)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감독(안 제15조 ~ 제16조)
-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 명예동물 보호관, 교육 및 홍보(안 제18조 ~ 제1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 ~ 10.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의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의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의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의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47
----------	------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27일
 발 의 자 : 이연주·이정순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현행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는 동물에 대한 유기나 학대에 대응하여 구조와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동반자적 관점의 동물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추세임. 따라서 이러한 취지와 방향성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남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참여와 협력(안 제3조~제4조)
- 동물복지계획의 시행(안 제5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행자 관리(안 제6조~제7조)
- 동물의 구조 및 보호, 공고, 임시보호 등(안 제8조~제10조)
- 동물의 반환 및 기증, 보호비용의 징수(안 제11조~제12조)
- 동물의 입양 지원(안 제13조)
- 길고양이의 관리 등(안 제14조)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감독(안 제15조~제16조)
-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 명예동물 보호관, 교육 및 홍보(안 제18조~제1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동물보호법」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보호조치”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때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시행) 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물의 등록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및 사망 등 영 제11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이내에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대행자 관리) ①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구청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지정을 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8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 ①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조한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의 임시보호 등)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임시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의 반환 및 기증)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조한 유실·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비용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동물의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구청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하여 중성화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6조 별표4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여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보호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때는 반려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구획을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명예동물보호관) ① 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개인·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동물과 관련하여 시행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농축수산과장 윤 영 희

[참고자료]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 6. 제86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이하 “보호시설운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보호시설운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관리 또는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74조제1호·제2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되거나 보호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보호시설운영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5.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제39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유기동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1.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3.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
4. 제51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5. 제53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6. 제5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그 종사자

8.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9.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0조(공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34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0조(거래내역의 신고) ①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제9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명예동물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5.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실신고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제1항제4호에 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고 그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한다.

⑤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 동안 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⑦ 제1항제7호 및 제8호 사유로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되, 변경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⑧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12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6.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

②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 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게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56호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2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업과 진로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6조 ~ 제7조)
- 업무의 위탁(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 ~ 10. 4.**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육은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48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27일

발 의 자 : 육은아 의원

찬 성 자 : 전용호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업과 진로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6조 ~ 제7조)
- 업무의 위탁(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민법」 제779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제8조
- 「청년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소를 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문화·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후원 연계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학업과 진로 및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하여 비용추계자료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노 송 희

[참고자료]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57호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2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안 제3조~제7조)
- 의견청취 및 비밀준수 의무(안 제8조, 안 제9조)
- 수당지원(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 ~ 10. 4.**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용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49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27일

발 의 자 : 전용호·전유형 의원

정승환·장덕수 의원

찬 성 자 : 김재남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안 제3조 ~ 제7조)
- 의견청취 및 비밀준수 의무(안 제8조, 안 제9조)
- 수당지원(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3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제79조, 제80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및 정책제안을 위하여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1.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에 관한 사항
3.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과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부단장은 위촉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분야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 및 기술사
2.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 있는 사람
3.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분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남동구의회의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그 밖에 주거정비 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촉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단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무) 자문단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지원)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운영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 내지 2호

3. 미첨부 사유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재개발사업 자문요청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자문단 운영 비용의 추계가 어려우나, 현재 운영중인 타 위원회, 자문단의 소요 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도시국 도시재생과장 윤 성 민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4.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
5. 관리처분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등은 위탁지원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지원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④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사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개정 2017. 8. 9.>

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⑧ 제7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58호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2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 (안 제3조 ~ 안 제4조)
-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홍보사항 등 :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 ~ 10.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50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27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이연주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제4조)
-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홍보사항 등(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하수도법」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남동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남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 빗물받이 유지관리 비용 비용
관련조문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 300개×90,000원 = 27,000,000원
 -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 1식×50,000,000원 = 50,000,000원
 - 빗물받이 추가 설치 및 정비 : 1식×100,000,000원 = 100,000,000원
- ※빗물받이 추가설치 및 정비 산출근거(연도별 사업비)

연 도	2021	2022	2023	평 균
총공사비	빗물받이 75개소 130,000,000	빗물받이 77개소 80,000,000	빗물받이 88개소 90,000,000	100,000,000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사 업 비	177,000	177,000	177,000	177,000	177,000	885,0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도시국 치수과장 이수화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177,000	177,000	177,000	177,000	177,000	885,000
빛물받이 악취저감장치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빛물받이 준설공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빛물받이 정비공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77,000	177,000	177,000	177,000	885,000
	구 비		177,000	177,000	177,000	177,000	885,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12. 27.>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59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2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조례에 인용된 행정규칙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 변경

2. 주요 내용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조항 신설(안 제10조)
- 연구활동 경비지출 기준으로 준용된 행정규칙명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 변경(안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 ~ 10.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4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44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27일

발 의 자 : 박정하 의원

찬 성 자 : 김재남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조례에 인용된 행정규칙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 변경

☐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조항 신설(안 제10조)
- 연구활동 경비지출 기준으로 준용된 행정규칙명이 변경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 변경(안 제13조)
- 그 밖에 띄어쓰기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원(이하“의원”)”을 “의원(이하 “의원”)”으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의원연구단체”란 남동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구정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1. ----- 의원(이하 “의원”----- -----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① ~ ③ (생략) <신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경비 지출) 제11조 및 제12조의 연구활동 경비 지출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3조(연구활동 경비 지출)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유 재 필 (인)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생략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61호

남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남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2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입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채용 및 공직자 임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구청장의 인사청문회 요청 시 대상자의 직위(안 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13조)
-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 ~ 10.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장덕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43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27일

발 의 자 : 장덕수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5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입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채용 및 공직자 임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청장의 인사청문회 요청 시 대상자의 직위(안 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13조)
-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제76조(설립·운영)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 대상 등)
-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증언거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의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한다.

④ 위원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임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남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 해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위원회의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유 재 필 (인)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47조의2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 2020. 6. 9., 2023. 6. 13.>

[전문개정 2011. 8. 4.]

[시행일: 2023. 12. 14.] 제76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2020. 6. 9.>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신설 2019. 12. 3.>

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전문개정 2020. 12. 8.]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62호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27.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위임에 따라 위원회 표결 방식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원회의 표결 신설(안 제55조의2)
- 그 밖에 조문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7. ~ 10. 4.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규칙안 : 별첨

- ※ 이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승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45
----------	------

발의연월일 : 2023년 9월 27일

발 의 자 : 정승환 의원

찬 성 자 : 육은아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위임에 따라 위원회 표결 방식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표결 신설(안 제55조의2)
- 그 밖에 조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83조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하여야”로 한다.

제55조의2를 제55조의3으로 하고,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위원회의 표결) ①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고,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표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 동의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④ 위원회 표결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의1 및 제56조의2를 각각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으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중 “부 당한”을 “부당한”으로, “변 상”을 “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과를 의회”를 “결과를 의회”로 한다.

제83조의1을 제83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의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신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기재 하여야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위원회의 표결) ①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고,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지 물어서 의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의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표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

제55조의2 (생 략)

제56조의1(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① ~ ③ (생 략)

제56조의2 (생 략)

제65조의2(결산심사에 따른 시정
요구) ①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 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본회의 의결 후 구청장 또
는 해당기관에 변 상 및 징계조
치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83조의1(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⑨ (생 략)

의 제의 또는 위원 동의로 위원
회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
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④ 위원회 표결에 관하여 이 장
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55조의3 (현행 제55조의2와 같음)

제56조의2(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의3 (현행 제56조의2와 같음)

제65조의2(결산심사에 따른 시정
요구) ① -----
---- 부당한 -----

----- 변상 -----
-----.
② -----
----- 결
과를 의회-----.

제8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⑨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유 재 필 (인)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125호

도 로 명 주 소 고 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27.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568-17 (남촌동)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25 (구월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12-6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568-17 (남촌동)	2009.11.16.	간석오거리에서 남동공단까지 남동구 전체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3.9.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 568-1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68-17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7-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140번길 21 (논현동)	2023.8.28.	에코중앙로 140 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9.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140번길 2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1을 건물번호로 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25 (구월동)	2023.9.27.	건축물대장 말소	